제3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2022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제3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2022. 7. 20.

국민권익위원회

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현황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사업 추진 결과 **전년도에 비해 설치가 증가**하는 추세('20년 49개 → '21년 62개 → '22.6월 67개)

○ 광역 지자체는 9개, 기초 지자체는 58개가 설치를 완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현황】

진행상황	구분	'22.6월	비 고
설치 완료	**전국**	**67**(27.6%)	
	광역	**9**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기초 (50만 이상)	**12**	강남구,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
	기초 (50만 미만)	**46**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 대구 동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 광명시 등

□ 22년 상반기 새롭게 설치된 시고위

지자체	명칭	설치일자	구성	의사결정
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22. 1. 1.	5명(비상근)	합의제
충남 당진시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22. 1. 3.	1명(상근)	독임제
대구달서구	**달서구 옴부즈만**	'22. 1. 10.	2명(상근)	합의제
인천 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22. 5. 2.	3명(상근)	합의제
서울 강남구	**강남구 옴부즈만**	'22. 5. 2.	2명(상근)	합의제
서울 성북구	**성북구 옴부즈만**	'22. 5. 26.	3명(상근)	혼합형

Ⅱ 고충해소 및 권익구제 성과

1 제도개선을 통한 고충유발 요인 해소

□ [당진시] 태양광 발전허가 관련 「주민 수용성 조사 지침」 제정

○ (문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절차 중 1단계인 '주민수용성 조사'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자와 주민 간, 또는 마을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

○ (개선) 수용성 조사 대상지역, 주민투표 방법, 갈등관리 절차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용성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제정해 권고하고, 전국 지자체와 개선 사례 공유

※ 시고위 제도개선 사례 교육 중 당진시 벤치마킹을 원하는 지자체(충남 홍성군, 경남 구례군 등) 다수 확인 → 유사 사례를 가진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수용성 조사 제도개선 방안 공유> 워크샵 실시 예정(8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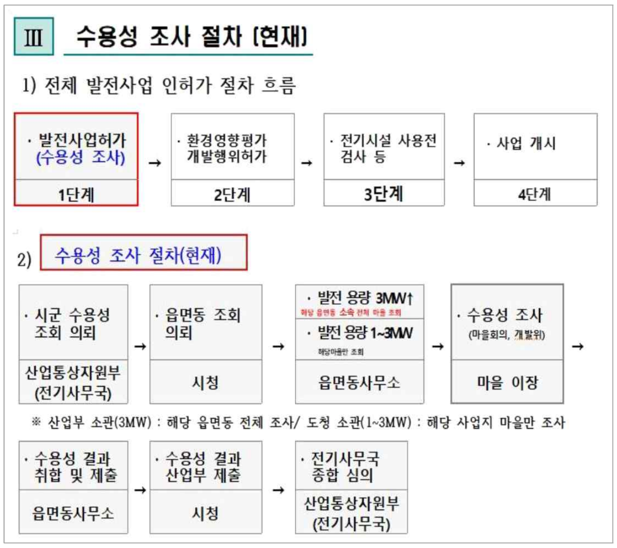

▲ 수용성 조사 절차(개정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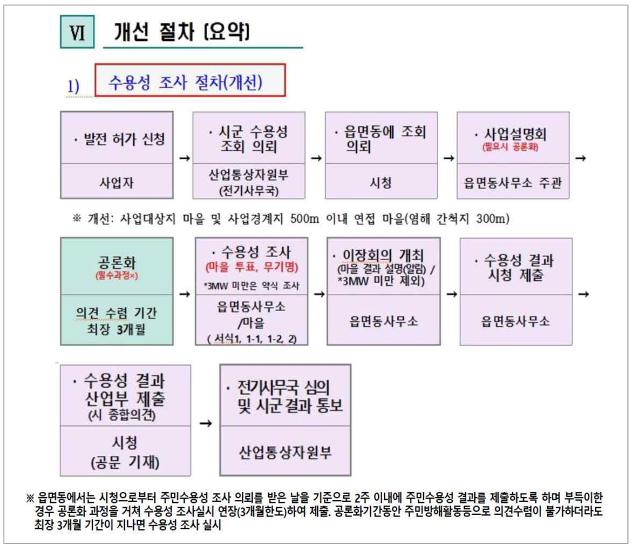

▲ 수용성 조사 절차(개정 후)

□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제한 기준 폐지

○ (문제)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는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여러 번의 시술이 필요한데, 지원 대상(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과 지원 횟수(5~7회)가 제한되어 있어 난임 부부의 치료비용 부담이 큰 상황

○ (개선) '22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및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권고

※ 경기도는 지원 기준 및 횟수 완전 폐지는 어려우나, 일부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7~9회)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비용 확대를 위한 요양급여율 상향조정을 건의하기로 회신

□ [안산시]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도로점용료 마련 제도개선

○ (문제)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태양광(열)발전소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어, 유사항목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과다 산정

○ (개선) 독점적 사용권이 보장되는 태양광(열)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면적기준 등을 적용하고, 독점적 사용권이 보장되지 않는 태양광(열)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시행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

관련민원 사례

▲ 시화호 수변도로
자전거도로 그늘막 태양광발전설비

▪ (민원) 신청인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시화호 수변도로에 '자전거도로 그늘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준하여 토지가액에 0.05를 곱한 약 4,200만 원을 도로점용료로 부과

▪ (안산시 시고위 판단) 태양광(열)발전설비가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용권을 보장받는 경우에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전거도로 그늘막은 도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그늘막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과도

□ [시흥시] 어린이집 대체기관장 평가제도 개선

○ (문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이 위탁하기 전에 발생했던 아동학대를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이로 인해 향후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

○ (개선) 아동학대 발생과 무관한 대체원장 또는 그 직을 이어받은 자에게 평가 시 최하점을 부여하는 것은 자기 책임의 한계를 넘는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바, 국·공립 어린이집 대체기관장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 처리기준 개선

○ (문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신고 처리 시 위반차량의 차량번호가 버스전용차로 주행 시에는 잘 보이지 않고 신고자의 차량 뒤로 이동한 후에야 식별된다는 이유로 과태료 미부과

○ (개선) 신고 동영상의 경우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최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적극적으로 처리토록「전용차로위반 시민신고 처리절차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

※「도로교통법」은 전용차로 주행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이나 영상기록 매체 등에 의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

▲ 경기 시흥시 시민자문단 회의

▲ 서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2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 적극 보호

□ [권익위 · 아산시 협업] 2개 시(市)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복지 지원

○ (민원) 신청인은 하지절단 장애인으로서, 팔순 노모와 OO시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신청인만 아산시에 실거주하게 되면서 임대아파트 계약이 해지될 상황

○ (해결) 아산시와 OO시에 걸쳐있는 고충민원으로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은 단독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와 협업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산시 시민옴부즈만과 권익위 조사관이 함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모친이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며, 아산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해결

※ 아산시 이동신문고를 통해 1차 상담을 진행한 후, 국민권익위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아산시와 권익위가 협업으로 조사 진행

□ [부천시] 장애인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 발급 거부 이의

○ (민원) 신청인은 지적장애1급의 중증장애인인데 신규분양주택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담당자가 신청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

○ (개선) 구술로 신청인의 의사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동반한 가족들에게 신청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는 노력이 필요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동일한 민원 사례 발생 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민원 응대를 할 것을 의견표명

※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구술 또는 필기로 인감신고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술·필기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하지 않는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응대하도록 명시

□ [이천시] 장애인에게 부과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철회

○ (민원) 신청인은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인데, 교통사고로 인해 3일간 정비업소에서 대여받은 차량(기존에 발급받은 장애인주차증 비치)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자 과태료 200만원 부과

○ (개선) 교통사고로 인해 임시 대여받은 차량에 장애인 주차증을 비치하여 사용한 것을 부당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비례와 형평에도 위배되는 가혹한 처분인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것을 권고

□ [성남시] 우울증 환자 복지센터 상담 매뉴얼 개선

○ (민원) 신청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복지센터에서 한차례 상담을 받고 5개월 후 다시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전화로 예약을 하였으나, 복지센터에서 확인 문자도 주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응대

○ (해결) 신청인이 한 차례 상담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관리받지 못한 점, 상담 예약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보살펴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적응력과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바, 복지센터 상담 예약 절차를 매뉴얼화 할 것을 시정권고

▲ 경기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정례회의

▲ 경기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관련 의견 청취 및 협의

□ [광주 북구] 생계급여 등 과다 차감 이의

○ (민원) 신청인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의 수급자인데, 최근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등을 과도하게 환수한 것은 부당

○ (해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생계급여 지급 기준에 이를 6개월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7개월간 반영한 것은 부당하니 과소 지급한 생계급여(212,332원)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 [여수시] 귀농·귀촌지원금 회수 취소 요청

○ (민원) 난치병(루프스)을 앓는 배우자 치료를 위해 귀농한 신청인은 여수시의 지원으로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으나, 당장 소득이 없어 배우자 치료비 마련을 위해 택배업체에서 6개월 근무한 것을 사유로 한 지원금 회수는 가혹하니 선처 요청

○ (해결) 신청인이 비록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는 하나, 귀농 후 최소 2~3년간 농업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 신청인의 근로행위는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 판단되는바, 지원금 회수를 유예할 것을 의견표명

▲ 광주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신청인 면담

▲ 전남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민원 현장 방문

3 집단민원 · 사회적 이슈 민원 해결

□ [제천시] 마을하수처리시설 대규모 증설 반대

○ (민원) A마을 입구에는 마을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 시설을 5배로 증설하여 인근 4개 마을 오폐수까지 처리할 계획을 세우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신청

○ (해결) 마을 입구에서 떨어진 곳에 인근 4개 마을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A마을 입구 하수처리장을 신설되는 하수처리장으로 일원화하는 중재안 마련

※ 제천시는 주민 반대를 감안하여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가압 양수기로 폐수를 끌어올려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판단하여 제3의 대안을 제시

□ [대구 동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진입도로 마련

○ (민원) B마을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마을 진출입로 폭이 협소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우니, 도로 확장·신설 요청

○ (해결)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련부서 합동회의를 통해 현재 마을 진출입로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간선도로와 연결된 마을 진출입로를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

※ 현재 새로운 진출입로 신설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추진 중

▲ 관계부서와 협의 중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 현장을 조사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 [남양주시] 아파트 재건축조합 대의원회 소집 승인 요구

○ (민원) OO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관계법령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대의원회 소집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남양주시는 조합의 정관에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승인을 거부

※ 신청인들은 남양주시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 정관에 따라 법원에 대의원회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라 대의원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라며 각하

○ (해결) 해당 정관은 상위법령에 반하여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관을 근거로 대의원회 소집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바, 피신청인에게 대의원회 소집을 승인할 것을 의견표명

□ [서울 마포구] 초등학교 통학로 인도 설치 요청

○ (민원)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인 A도로는 평소 차량의 양방향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

○ (해결) A도로는 양방향 차량 통행과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통행 및 C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 여건*에 맞는 인도를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

* A도로의 양쪽 건물에는 각각 건물주차장에 차량이 진입하고 있어 보행자의 보행을 고려하여 한쪽 도로에 통학로 설치 필요

▲ 경기 남양주시 옴부즈만 정례회

▲ 서울 마포구 옴부즈만 현장조사

□ [상주시] 마을진입로로 이용되고 있는 철도부지 포장 요구

○ (민원) 상주시 OO은 경북선 철도가 지나가는 마을로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로 중 약 30m가 철도부지로 편입되어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비포장인 상태로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이 매우 불편한 상황

○ (해결) OO동 마을진입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철도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철도부지로서 철도 관리 목적 외의 시설물 설치는 금지되는바, 콘트리트나 아스콘 등을 이용한 포장 대신 파쇄석(자갈)을 깔아 통행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으로 협의

□ [서울 관악구] A종합체육센터 전기차 충전소 상시 개방 요청

○ (민원) 거주지 인근 A종합체육센터 내 전기차 충전소는 업무시간 이외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 상당히 불편하니,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개방해 줄 것을 요청

○ (해결) 친환경차 보급은 국가 주요정책인 만큼 주민들이 공평히 A종합체육센터 내 전기차 충전소를 24시간 이용하도록 개방할 것을 의견표명

※ 최근 전기차를 소유하는 구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상시 개방을 요청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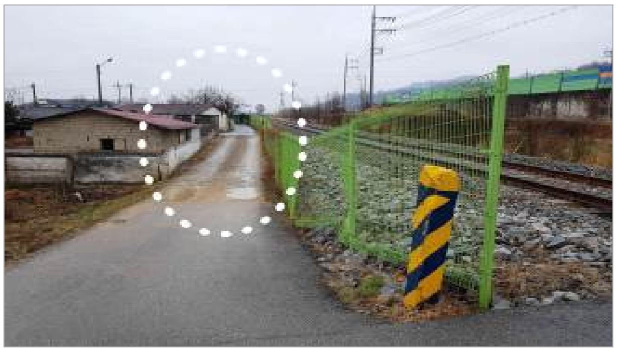

▲ 상주시 OO마을 비포장 진입로

▲ 현장조사 중인 상주시 옴부즈맨

4 달리는 국민신문고로 고충민원 현장 해결

□ (권익위-시흥시 협업) 달리는 국민신문고 합동 상담('21. 12. 16.)

○ 국민권익위와 시흥시가 합동으로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합동 상담 실시

○ 6개 기관(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등) 15명의 조사관이 방문해 행정과 교통, 복지, 생활법률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협력회의」가 함께 개최돼 인근 지역 부천·안산·광명시의 대표 옴부즈만 위원들이 참관

□ (울산시) 지역 주민과 함께 달리는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 '21년 한 해 동안 총 2회의 찾아가는 시민신문고를 운영(6월/12월)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창구 역할

○ 고충민원뿐만 아니라 생활민원 상담까지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

※ 제2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개최 시 인권상담센터와 협업으로 인권분야 상담 창구까지 추가로 설치하여 권익구제 확대

▲ 권익위-시흥시 합동 달리는 국민신문고

▲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 [아산시] 찾아가는 읍 · 면 · 동 고충민원 상담의 날

○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상담

○ 시민들에게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을 널리 홍보하고, 현장에서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고충민원 해결

▲ 아산시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홍보 게시물

▲ 아산시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 현장

□ [부천시] 찾아가는 옴부즈만 현장 상담실 운영

○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지하철역, 아파트형 공장, 전통시장,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으나 '22. 5월 상동시장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하여, 6월 원미부흥시장에서 현장 상담 실시

※ '22. 9월 국민권익위와 협업으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예정

▲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현장 상담실 홍보 게시물

▲ 부천시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 현장

붙임1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개요

□ 설립 배경

○ 국민권익위(舊 국민고충처리위 포함)는 **'05년 시민고충처리위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민고충처리위 활동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 일부 시민고충처리위가 중심이 되어 '16.12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침체

* 자체적인 정관 마련, 국민권익위는 필요시 참관

○ 최근 **고충민원의 급증추세**로 인해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고충민원 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

※ 고충민원 접수 : ('19) 56,189 → ('20) 49,390 → ('21) 56,423 → ('22.6.) 18,516

○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지방옴부즈만)와의 연계 강화 등을 위해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0.9.22.)

□ 구 성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대표 위원**

○ (의장 2명)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선출된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이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과 업무를 총괄

○ (부의장 2명)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부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대표 위원 중 선출된 위원

○ (간사 1명)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 (임기) 국민권익위 또는 시민고충처리위 **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

□ 기 능

○ 시고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시고위 정책·제도 등의 조사·연구,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 시고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장이 권익위원회 상호 협력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개 최

○ (정기회) 반기별 1회

○ (임시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

□ 운 영

○ 협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통지

○ 안건 논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간사가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

붙임2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운영 현황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연임제한)	의사결정
1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	3년(단임)	합의제
2	대구광역시		복지·인권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3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7명(상근+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5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5	경 기 도		옴부즈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	강 원 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7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8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9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9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0	서울 (16)	종로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1		성동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12		동대문구	옴부즈만	2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13		성북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4		강북구	구민참여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5		도봉구	옴부즈만	4명(상근)	2년(1회)	합의제
16		은평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7		서대문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	합의제
18		마포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19		양천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독임제
20		구로구	옴부즈맨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21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22		동작구	옴부즈만	4명(상근)	2년(1회)	합의제
23		관악구	옴부즈맨	3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4		강남구	옴부즈만	2명(상근+비상근)	2년(1회)	합의제
25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독임제
26	대구 (3)	동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27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2명(상근)	4년(1회)	합의제
28		달서구	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29	인천 (2)	미추홀구	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0		연수구	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1	광주 (3)	남구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2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33		광산구	시민권익위원회	9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연번	지자체		명칭	구성	임기(연임제한)	의사결정
34	대전	대덕구	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5	울산 (3)	남구	옴부즈만	2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36		북구	옴부즈만	3명(비상근)	2년(1회)	독임제
37		울주군	군민권익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8	경기 (16)	수원시	시민가디언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39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0		안양시	민원옴부즈만	10명(상근+비상근)	2년(1회)	독임제
41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42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43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44		안산시	시민옴부즈만	3명(상근)	2년(1회)	합의제
45		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6		시흥시	시민호민관	1명(상근)	4년(단임)	독임제
47		하남시	옴부즈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48		용인시	옴부즈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49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3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50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4년(단임)	합의제
51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4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2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5명(상근)	2년(1회)	합의제
53		여주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4	강원 (2)	원주시	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5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56	충북 (2)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0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7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8명(상근+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58	충남 (3)	공주시	시민옴부즈만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59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60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61	전북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2	전남 (4)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2명(상근)	2년(1회)	합의제
6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5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4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
65		화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7명(비상근)	2년(1회)	합의제
66	경북	상주시	옴부즈맨	1명(상근)	2년(1회)	독임제
67	경남	양산시	옴부즈만	3명(비상근)	4년(단임)	합의제